



고속도로 구조물 2종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2021.



구 조 물 처

첨부(2)

I. 일반 사항

1. 본 평가기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PQ로 한다)으로서 당해 용역은 이 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2. PQ 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단, 하자만료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용역과 성능평가용역(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할 경우도 포함)은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PQ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 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사업책임기술인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자격(기술자격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 다.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중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사업책임 기술인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과 현저하게 다른 인원비로 참여하는 것으로 PQ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때 지분율에 따른 인원 산정시 소수 이하는 올림 또는 버림하여 조정하되 참여업체별 최소 1인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마. 우리 공사에서 정한 다음의 참여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평가결과가 미흡(70점미만 60점이상), 시정(60점미만 50점이상) 또는 부실(50점미만)인 경우 해당용역의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재검토후 지적사항(건수)에 대한 조치실적(건수)이 50%미만인 경우
 -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중 기술인 변경(교체, 제외, 추가) 사항 미보고 사례 발견 누적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첨부(2)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참여기술인이 분야별 초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1개 업체가 동일 공고 건에 있는 2개 이상의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때, 책임기술인(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를 다른 용역에 책임 또는 참여기술인으로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책임기술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PQ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4. 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PQ평가지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해당용역 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7.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경력의 기산일은 관련법령이 제정된 1995년 1월 5일 이후로 한다.
9.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할 수 없고,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PQ 평가는 공고문에 기재된 PQ평가 신청서 제출기한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자료에 평가기준상 요구하는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감점 처리한다.

첨부(2)

12. 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3. PQ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교량 및 터널'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 교량, 터널,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공동구를 포함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동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용역 수행 실적 중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 분야의 시설물에 대하여 발주청이 시행한 준공된 수행실적으로 한다.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은 도로법 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에 설치되어 차량통행이 있는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을 말하며 해당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 교량, 터널,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공동구를 포함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의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참여기술인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 2) 참여기술인 실적

첨부(2)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발주청이 발급 또는 확인한 실적증명서(단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외)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실적확인서(단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외)

마.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2인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중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 분야의 시설물에 대하여 발주청이 시행한 준공된 용역을 말한다.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은 도로법 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에 설치되어 차량통행이 있는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을 말하며 해당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 교량, 터널,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공동구를 포함한다.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발주청이 발급 또는 확인한 실적증명서(단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외)

첨부(2)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실적확인서(단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외)

3.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단, '20.5.7 이후 착수 용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실시결과 평가에 따른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하며, 처분건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업체에서 받은 건수를 말한다.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하며, 처분사항은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처분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사용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세부평가기준에서 제시된 사항만 인정한다.

- 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

첨부(2)

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2)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8. 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요소의 최저 점수로 평가한다.

첨부(2)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3.0	AAA	-	AAA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2.8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2.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Ⅲ. 입찰참가자 선정

본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하며, 심사결과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첨부(2)

IV.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가. 참여 기술인	소 계	45	- 평가대상 중 공고일 기준 365일 이내에 용역업체를 옮긴 참여기술인에 대해 세부 항목별 해당점수에 이적 보정계수 적용.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또는 회사 경영악화(이적전 회사발행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등의 사유로 인한 이적 및 이적 전 회사에 5년이상 장기근속자는 미적용 ※ 산출식: 기술인별 배점 ×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 ▶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0.9+0.1 × (A / 365)(A: 이적후 경과일수)															
	1) 등 급	4	① 공통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인의 기술등급 직무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설계·시공 등의 토목분야로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에 의거 토목분야 초급이상이어야 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인으로 등록한 자로 한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 정밀안전점검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한다.															
	· 분야책임 I	(1.0)																
	· 분야책임 II	(1.0)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 시설물의 성능평가 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용역의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분야참여 I	(1.0)																
	· 분야참여 II	(1.0)																
			②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 정밀안전점검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공통사항과 토목 직무분야 고급이상을 만족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하는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공통사항과 토목 직무분야 특급 및 실무경력(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 분야별 책임기술인 <table><tr><td>기술인 등급</td><td>점수</td></tr><tr><td>직무분야 고급이상</td><td>1.0</td></tr><tr><td>직무분야 중급</td><td>0.6</td></tr><tr><td>그 외 등급</td><td>0.0</td></tr></table> - 분야별 참여기술인 <table><tr><td>기술인 등급</td><td>점수</td></tr><tr><td>직무분야 고급이상</td><td>1.0</td></tr><tr><td>직무분야 중급</td><td>0.6</td></tr><tr><td>그 외 등급</td><td>0.0</td></tr></table>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기술인 등급	점수	직무분야 고급이상	1.0	직무분야 중급	0.6	그 외 등급	0.0	기술인 등급	점수	직무분야 고급이상	1.0	직무분야 중급	0.6	그 외 등급	0.0
기술인 등급	점수																	
직무분야 고급이상	1.0																	
직무분야 중급	0.6																	
그 외 등급	0.0																	
기술인 등급	점수																	
직무분야 고급이상	1.0																	
직무분야 중급	0.6																	
그 외 등급	0.0																	

첨부(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2) 경 력	17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가) 사업책임기술인	8.0	<table><tr><td>경력기간</td><td>6년 이상</td><td>6년미만 5.5년이상</td><td>5.5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 미만</td></tr><tr><td>점수</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	경력기간	6년 이상	6년미만 5.5년이상	5.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경력기간	6년 이상	6년미만 5.5년이상	5.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6.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책임 I	(3.0)	<table><tr><td>경력기간</td><td>5년 이상</td><td>5년미만 4.5년이상</td><td>4.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 미만</td></tr><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경력기간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경력기간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분야책임II	(3.0)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3.0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분야참여 I	(1.5)	<table><tr><td>경력기간</td><td>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 1년이상</td><td>1년미만</td></tr><tr><td>점수</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0.9</td></tr></table>	경력기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5	1.35	1.2	1.05	0.9	
경력기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5	1.35	1.2	1.05	0.9										
· 분야참여II	(1.5)														
② 경력은 “해당전문분야”에 실제 참여한 기간으로 평가하며,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의 주요경력의 ‘인정일’(참여기간 아님)로 본다.															
③ “해당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이며,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해당전문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인정일의 100%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첨부(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3) 실적(건수)	14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가) 사업책임기술인	5.0	<table><tr><td>실적 (건수)</td><td>15건이상</td><td>15건미만 12건이상</td><td>12건미만 9건이상</td><td>9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td></tr><tr><td>점수</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	실적 (건수)	15건이상	15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실적 (건수)	15건이상	15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책임 I	(2.5)	<table><tr><td>실적 (건수)</td><td>12건이상</td><td>12건미만 9건이상</td><td>9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3건이상</td><td>3건미만</td></tr><tr><td>점수</td><td>2.5</td><td>2.25</td><td>2.0</td><td>1.75</td><td>1.5</td></tr></table>	실적 (건수)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실적 (건수)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 분야책임 II	(2.5)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4.0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분야참여 I	(2.0)	<table><tr><td>실적 (건수)</td><td>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 2건이상</td><td>2건미만</td></tr><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실적 (건수)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2.0	1.8	1.6	1.4	1.2	
실적 (건수)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분야참여 II	(2.0)														
		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④ 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II.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첨부(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 실적(금액)	1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가) 사업책임기술인	5.0	<table> <tr> <th>실적 (금액)</th> <th>7억이상</th> <th>7억미만 6억이상</th> <th>6억미만 5억이상</th> <th>5억미만 4억이상</th> <th>4억미만</th> </tr> <tr> <th>점수</th>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실적 (금액)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실적 (금액)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분야책임 I	(2.5)	<table> <tr> <th>실적 (금액)</th> <th>6억이상</th> <th>6억미만 5억이상</th> <th>5억미만 4억이상</th> <th>4억미만 3억이상</th> <th>3억미만</th> </tr> <tr> <th>점수</th> <td>2.5</td> <td>2.25</td> <td>2.0</td> <td>1.75</td> <td>1.5</td> </tr> </table>	실적 (금액)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실적 (금액)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 분야책임 II	(2.5)													
	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준공 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II.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④ 기술인 실적(금액)은 해당분야 수행실적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의 주요경력의 '인정일'(참여기간 아님)로 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계약기간 120일인 용역을 50일 참여한 경우 $실적(금액) = 1억원 \times 50(인정일) / 120(계약기간) = 0.4억원$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첨부(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소 계	25													
	1) 건 수	12	① 배점표 <table><tr><td>참여 건수</td><td>20건이상</td><td>20건미만 15건이상</td><td>15건미만 10건이상</td><td>10건미만 5건이상</td><td>5건미만</td></tr><tr><td>점수</td><td>12.0</td><td>10.8</td><td>9.6</td><td>8.4</td><td>7.2</td></tr></table> ②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④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II.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건수) = 1건 × 0.7(참여지분율) = 0.7건	참여 건수	20건이상	20건미만 15건이상	15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참여 건수	20건이상	20건미만 15건이상	15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2) 금 액	13	① 배점표 <table><tr><td>참여 금액</td><td>15억이상</td><td>15억미만 11억이상</td><td>11억미만 7억이상</td><td>7억미만 3억이상</td><td>3억미만</td></tr><tr><td>점수</td><td>13.0</td><td>11.7</td><td>10.4</td><td>9.1</td><td>7.8</td></tr></table> ②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II.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금액) = 1억 × 0.7(참여지분율) = 0.7억원	참여 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참여 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첨부(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신용도	소 계	10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신용도 평가방법은 II.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4	① 배점표 <table><tr><th>실시결과 평가결과</th><th>시정</th><th>부실</th></tr><tr><td>감점</td><td>건당 0.3점 감점</td><td>건당 0.7점 감점</td></tr></table> ②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수로 산정한다. ※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20.5.7 이 후 착수한 용역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able><tr><th>실시결과 평가결과</th><th>미흡</th><th>불량</th><th>매우불량</th></tr><tr><td>감점</td><td>건당 0.3점 감점</td><td>건당 0.5점 감점</td><td>건당 0.7점 감점</td></tr></table> ※ 대상 :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부실	감점	건당 0.3점 감점	건당 0.7점 감점	실시결과 평가결과	미흡	불량	매우불량	감점	건당 0.3점 감점	건당 0.5점 감점	건당 0.7점 감점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부실																	
감점	건당 0.3점 감점	건당 0.7점 감점																		
실시결과 평가결과	미흡	불량	매우불량																	
감점	건당 0.3점 감점	건당 0.5점 감점	건당 0.7점 감점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① 배점표 <table><tr><th>대상</th><th>용역사</th><th>기술인</th></tr><tr><th>처분기간</th><td>입찰참가 제한기간</td><td>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td></tr><tr><th>감점</th><td>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td><td>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td></tr></table> ② 용역사 및 기술인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으로 산정한다. ※ 대상 :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 용역사평가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기술인평가는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대상	용역사	기술인	처분기간	입찰참가 제한기간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감점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대상	용역사	기술인																		
처분기간	입찰참가 제한기간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감점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① 배점표 <table><tr><th>회사채</th><th>BBB-이상</th><th>BBB-미만 B-이상</th><th>CCC+이하</th><th rowspan="3">미제출</th></tr><tr><th>기업어음</th><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r><tr><th>기업신용</th><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r><tr><th>점수</th><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 ※ 첨부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②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8	2.1	0																

첨부(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소 계	10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1) 개발·사용실적	2	① 배점표 - 기본점수 <table><tr><td>구 분</td><td>건설신기술</td><td>특허</td></tr><tr><td>기본점수</td><td>건당 1.0점</td><td>건당 0.6점</td></tr></table> -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table><tr><td>실적건수 (건)</td><td>5이상</td><td>4</td><td>3</td><td>2</td><td>1</td></tr><tr><td>실적금액 (억원)</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0.5이상</td></tr><tr><td>가중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 ② 개발·사용실적은 건별 기본점수에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는 건수 또는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하며,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가중치는 0으로 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③ 개발·사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활용한 실적 중 다음의 경우로 한다. -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되어 보호기간 내에 있으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 - 특허 :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제시한 보수·보강공법은 제외 ④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⑤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⑥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는 ‘제출처’를 ‘한국도로공사’라고 표기된 증명서만 인정된다. ⑦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⑧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은 일반사항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1.0점	건당 0.6점	실적건수 (건)	5이상	4	3	2	1	실적금액 (억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1.0점	건당 0.6점																								
실적건수 (건)	5이상	4	3	2	1																					
실적금액 (억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첨부(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2) 투자실적	8	① 배점표 <table><tr><td>구분</td><td>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점수</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 ②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투자실적 = $\frac{\text{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text{최근 3년간 건설부문총매출액 합계}} \times 100$ ③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④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투자실적 증명자료는 다음의 서류로 한다. - 투자액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 매출액 :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 4월 10일 이전 입찰공고 전에 대해서는 전전년 3년간 투자실적으로 평가한다. (예시 : 2020년 3월 20일 입찰공고시 제출서류 : 2016,2017,2018년도 자료)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소 계		10													
마. 업무 중첩도	1) 사업책임기술인	6.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table><tr><td>구분</td><td>3월미만</td><td>3월이상 6월미만</td><td>6월이상 9월미만</td><td>9월이상 12월미만</td><td>12월이상</td></tr><tr><td>점수</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 분야별책임기술인 <table><tr><td>구분</td><td>3월미만</td><td>3월이상 6월미만</td><td>6월이상 9월미만</td><td>9월이상 12월미만</td><td>12월이상</td></tr><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2.0	1.8	1.6	1.4	1.2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2.0	1.8	1.6	1.4	1.2										
· 분야책임 I	(2.0)														
· 분야책임 II	(2.0)														
			② 본 용역의 과업기간에 대하여 다른 용역 잔여과업기간과 중복되는 과업기간을 평가한다. ※ 다른 용역 :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모든 용역 ※ 잔여과업기간 : 본 용역 공고문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개찰예정일로 한다)로부터 다른용역의 준공예정일로 한다. ※ 전체 용역기간에 비해 실투입일수가 적은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용역 및 비상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												

첨부(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가감점	1) 정밀안전점검 평가	-1/건	① 배점표 <table><tr><td>전년도 평가결과</td><td>미흡 (70점 미만 60점 이상)</td><td>시정 (60점 미만 50점 이상)</td><td>부실 (50점 미만)</td></tr><tr><td>감점</td><td>- 0.3</td><td>- 0.5</td><td>- 1.0</td></tr></table> ②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준공 전에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감점한다. ③ 감점은 용역 건별로 산정하여 1년 단위로 합산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70점 미만 60점 이상)	시정 (60점 미만 50점 이상)	부실 (50점 미만)	감점	- 0.3	- 0.5	- 1.0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70점 미만 60점 이상)	시정 (60점 미만 50점 이상)	부실 (50점 미만)							
	감점	- 0.3	- 0.5	- 1.0							
2) 초기점검 평가	±1/건	① 배점표 <table><tr><td>전년도 평가결과</td><td>우수 (90점이상)</td><td>미흡 (60점미만 40점이상)</td><td>부실 (40점미만)</td></tr><tr><td>가감점</td><td>1.0(가점)</td><td>- 0.5(감점)</td><td>- 1.0(감점)</td></tr></table> ② 전년도 초기점검 용역에 대하여 준공 전에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가 우수(90점이상) 또는 미흡·부실(60점미만)인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한다. ③ 가감점은 용역 건별로 산정하여 1년 단위로 합산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가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90점이상)	미흡 (60점미만 40점이상)	부실 (40점미만)	가감점	1.0(가점)	- 0.5(감점)	- 1.0(감점)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90점이상)	미흡 (60점미만 40점이상)	부실 (40점미만)								
가감점	1.0(가점)	- 0.5(감점)	- 1.0(감점)								
3) 기술인 관리	- 2	①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중 교체 및 퇴직 등에 따른 참여 기술인 변경사항 미보고 사례 발견 건수 - 평가점수 = (발견건수) × 1.0점(감점) ②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감점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은 PQ 평가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리하며, 과업중 또는 완료 후 발견된 미보고 사례건수를 기준으로 함.									

첨부(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가감점	4) 별점	- 1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의 '5. 별점측정기준의 업체 및 기술인에게 부과되는 별점으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별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 ② 별점의 적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 성능평가 용역 수행시 부과된 별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별점 = $\Sigma(\text{용역사 누계평균별점} \times \text{지분율})$ + $\Sigma(\text{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의 누계평균별점})$ ③ 배점표 <table><tr><th>별점</th><th>0.1점미만</th><th>0.1점이상 0.5점미만</th><th>0.5점이상 1.0점미만</th><th>1.0점이상 1.5점미만</th><th>1.5점이상</th></tr><tr><th>감점</th><td>-</td><td>- 0.25</td><td>- 0.5</td><td>- 0.75</td><td>- 1.0</td></tr></table>	별점	0.1점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	- 0.25	- 0.5	- 0.75	- 1.0
	별점	0.1점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	- 0.25	- 0.5	- 0.75	- 1.0										
	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0.3	① 배점표 <table><tr><th>신규 고용율</th><th>1%이상</th><th>2%이상</th><th>3%이상</th></tr><tr><th>가 점</th><td>0.1</td><td>0.2</td><td>0.3</td></tr></table> -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0.1	0.2	0.3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0.1	0.2	0.3												